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88호 2021. 4. 5(월)

차 례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 폐지 지침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7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 10

공 고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4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 1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86호 2021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18호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27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63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30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 폐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4월 5일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 폐지 지침

인천광역시 서구 감사사무 처리요령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6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지구 RC4BL 주상복합 신축공사(서구)
2. 사업주체 : (주)센테리움개발 (대표 서종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비 1층3호(삼성동, 삼성금융프라자)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RC4블록
 - 나. 대지면적 : 19,958㎡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96,327.0518㎡ (지하 2층, 지상 3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 4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1개동, 판매시설 1개동, 근린생활시설 1개동
 - 마. 사 업 비 : 329,213,963천원
4. 사업기간 : 2021. 4. 22. ~ 2024. 5. 22.

5. 변경사항

- 사업비/자금계획 변경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끝.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 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공동주택 신축
2. 사업주체 : (주)대우건설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 나. 대지면적 : 85,540㎡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84,220.96㎡ (지하2층 ~ 지상29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세 대 수 : 1,540세대
4. 사업기간 : 2019. 1. 20. ~ 2021. 8. 31.
5. 변경사항
 - 연면적 +1.49㎡ 증가 및 기타변경(붙임 참조)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내역 1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 대지위치 : 원당동 검단신도시 AB16블록

구분	도면번호	도면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01	G-023~024	설계개요	1. 설계개요 - 건축면적 변경 : 11,262.63㎡→11,340.19㎡ 증가 : 77.56㎡(부문주, 근린생활시설, 티하우스) 13.17% → 13.26% 증가 0.09% - 지상층 연면적 변경 : 177,898.71㎡ → 177,900.20㎡ 증가 1.49㎡ <table><tr><th>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후</th><th>증감</th></tr><tr><td>근린생활시설</td><td>960.02</td><td>961.53</td><td>(+)1.51㎡</td></tr><tr><td>티하우스</td><td>48.50</td><td>48.48</td><td>(-)0.02㎡</td></tr><tr><td>합계</td><td>177,898.71㎡</td><td>177,900.20㎡</td><td>(+)1.49㎡</td></tr></table>		구분	변경 전	변경후	증감	근린생활시설	960.02	961.53	(+)1.51㎡	티하우스	48.50	48.48	(-)0.02㎡	합계	177,898.71㎡	177,900.20㎡	(+)1.49㎡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및 오기 수정 - 티하우스 도면 추가 - 단지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시설 반영	
구분	변경 전	변경후	증감																			
근린생활시설	960.02	961.53	(+)1.51㎡																			
티하우스	48.50	48.48	(-)0.02㎡																			
합계	177,898.71㎡	177,900.20㎡	(+)1.49㎡																			
02	G-0025	배치도	1.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동선 일부 변경		- 장애인협회 협의사항 반영에 따른 주차동선 변경																	
03	A-1101~	근린생활 시설 평면도	1. PIT층 평면도 추가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도서 반영																	
			2. 주변현황 레벨에 따른 지상1층 바닥레벨 변경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3. 입면 세부계획, 설비 세부계획 및 바닥레벨 변경에 따른 엘리베이터홀 변경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4. 설비 세부 계획에 따른 설비공간 확보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5. 설비공간 벽 일부 골조에서 조적으로 변경 및 단열재 변경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6. 근린생활시설 칸막이벽 두께 100mm에서 140mm로 변경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7. 지상1층 전·후면 보행통행로 변경		- 장애인 통행의 편의성을 확보 - 장애인협회 협의사항 반영																	
			8. 지상2층 복도 커버트렌치 설치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9. 레벨 단차변경에 의한 창호 수정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 추가		- 실시설계 세부계획에 따른 도서 반영 - 외부환경 특화사항 반영																	
04	A-1161~	티하우스	1.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일람표 추가		- 티하우스 도면 추가 - 단지 외부환경 개선을 위한 특화시설 반영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사월로 62-15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4.5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4-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향길동 97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62-15 (향길동)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향라동 55-16	인천광역시 서구 향라향네로161번길 17-11 (향라동)	20140804	향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향라향네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1-4-5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향길동 97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62-15 (향길동)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2	인천광역시 서구 향라동 55-16	인천광역시 서구 향라향네로161번길 17-11 (향라동)	20140804	향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향라향네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내용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우미산업개발 (대표자 : 고필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우산동)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AA8블록
 - 나. 대지면적 : 18,169㎡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54,931.1913㎡ (지하 2층, 지상 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4개동 3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40,643,936천원
4. 사업기간 : 2021. 2. 1. ~ 2023. 7. 1.

5. 변경사항(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가. 사업비 변경(기본형 건축비 정기인상)
- 나. 경량벽체 수정
- 다. 공사기간 변경

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붙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세부내역 1부. 끝.

주택건설사업계획 [2차변경]승인 변경내용

- ☐ 사 업 명 : 인천검단 AA8BL 공동주택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 AA8블록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승 인 일 : 2020.10.12. 제2020-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호
☐ 변경내역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개 요	대지면적		18,169.0000㎡			변경없음			-			
	연 면 적	지상	35,327.1741㎡									
		지하	19,604.0172㎡									
		합계	54,931.1913㎡									
	용적율산정용 연 면 적		35,327.1741㎡									
	용 적 율		194.44%									
	건축면적		2,643.4984㎡									
	건 폐 율		14.55%									
	형별 면적	구분	전용	공용	공급	전용	공용	공급	전용	공용	공급	
		59A	59.9380	23.6814	83.6194	변경없음			-			
		59B	59.8198	23.6308	83.4506							
	84	84.8773	24.4267	116.5221								
	세대수		370세대			변경없음			-			
	층수		지하2층~지상25층									
	주차대수		484대									
	■용도별 면적											
	아파트		34,641.6770㎡			변경없음			-			
	관리 사무 소	지상	32.4962㎡			변경없음			-			
		지하	240.3220㎡			변경없음			-			
		합계	272.8182㎡			변경없음			-			
경로당		81.4029㎡			변경없음			-				
어린이집		177.7345㎡			변경없음			-				
작은도서관		109.6240㎡			변경없음			-				
경비실		20.2858㎡			변경없음			-				
지하주 차장	B2F	8,628.6185㎡			변경없음			-				
	B1F	8,764.7197㎡			변경없음			-				
	합계	17,393.3382㎡			변경없음			-				
기계,전기실		626.3461㎡			변경없음			-				
주민공동시설		584.6583㎡			변경없음			-				
키즈스테이션		64.0368㎡			변경없음			-				
공용창고		649.7286㎡			변경없음			-				
외부공용		14.0221㎡			변경없음			-				
근린생활시설		295.5188㎡			변경없음			-				
합 계		54,931.1913㎡			변경없음			-				

구 분		설계변경내용		변경사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1	사업비 변경	137,357,624,000 원	140,643,936,000 원	3,286,312,000 원 증가 21.3월 기본형 건축비 정기인상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의 건 ■ 금회 인상률 전용면적 50㎡ 초과 ~ 60㎡ 이하 1.9% 전용면적 60㎡ 초과 ~ 84㎡ 이하 0.9%	-
2	경량벽체 수정	59B (확장형), 84 (기본형, 확장형) 드레스룸 경량벽체	59B (확장형), 84 (기본형, 확장형) 드레스룸 경량벽체 삭제	분양시 옵션으로 포함된 내용	-
3	공사기간 변경	사용검사 예정일 2023년 10월 31일	사용검사 예정일 2023년 7월 30일	공사계획서에 의한 변경 분양카다로그에 명기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204호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1. 공고기간: 2021. 4. 5. ~ 2021. 4.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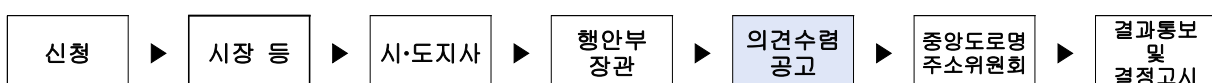
2. 의견 제출

붙임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4.1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1)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주소정책과 앞
- 전자우편: dh1228@korea.kr / FAX: 044-204-8962
- 문의 전화: 044-205-3560

3. 도로명 및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 절차



붙임 1**의견서 양식****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에 대한 의견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의견 제출 대상		
도로구간 설정 (안)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예비 도로명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 - 사유	

도로구간 설정(안)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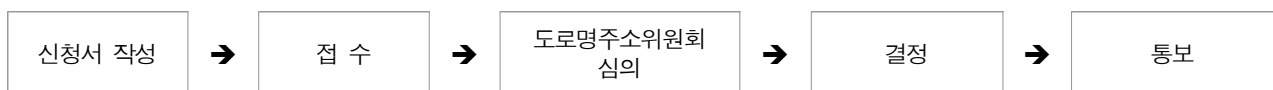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처리절차



붙임 2**대곶검단로 도로명 신규 부여**

○ 도로구간 조서

구분	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m)	중심선	기초 번호	예비 도로명	도로명 부여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신규	8,773	30~40	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387-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737	경기도, 인천광역시	20	아래	1~878	대곶 검단로	김포시 대곶면에서 인천 서구 검단동(행정동)을 잇는 도로로, 도로구간이 경유하는 행정구역 명칭을 인용하여 명명

○ 중심선 및 시·종점 확대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486호

2021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1. 3. 13 ~ 4. 18. (37일간)

나. 사유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75%가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구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구청(동사무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796
- 인천광역시청 녹지정책과: 032-440-3683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3. 당부사항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이 구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산가능 지역 여부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인터넷 포털(네이버) 지도에서 주소지 입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을 뿌린 후 산불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엄중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618호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 열람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I.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A-1 용도)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기정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변경		비고
			획	지					획	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A-1	4	4,239.0	1	425.4		A-1	4	4,239.0	1	425.4	
			2	333.0					2	333.0	
			3	285.4					3	285.4	
			4	222.8					4	222.8	
			5	808.0	3개획지로 분할가능				5	808.0	3개획지로 분할가능
			6	242.0					6	483.4	
			7	241.4					8	242.8	
			8	242.8					9	301.4	
			9	301.4					10	503.0	2개획지로 분할가능
			10	503.0	2개획지로 분할가능				11	223.0	
			11	223.0					12	410.8	
			12	410.8							

■ 단독주택용지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서

가구번호	위 치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서
4	6, 7	◦ 획지합병 - 6 : 242.0㎡ - 7 : 241.4㎡ ⇒ 6 : 483.4㎡	◦ 획지합병 기준에 적합한 획지합병을 통해 적정규모의 개발 유도로 주거 활성화 도모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II.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기획담당관, 032-560-5773, 서구 서곶로 307)

IV.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의 건 서

일 시	2021. . .
성 명	
주 소	※ 회신가능한 주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연 락 처	※ 회신가능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도시계획 변경사항	도시관리계획(오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의 건 사 항	
※ 의견사항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627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검단로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720-3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1-311호선)
 - 명칭 : 검단로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 사업의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07
변경	도로	소로	1	311	10	10	340	-	340	-	4,117

2. 사업의 근거

- 2018. 07. 23. :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고시 (서구 고시 제2018-97호)
- 2019. 05. 20. : 실시계획인가 고시(서구 고시 제2019-95호)
- 2019. 12. 30.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서구 고시 제2019-257호)
- 2021. 03. 08. :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서구 고시 제2021-42호)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5. 보상계획열람(이의신청)기간 및 장소

- 열람공고(이의신청)기간 : 2021. 04. 05. ~ 2021. 04. 23. (15일 이상)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기반과 도시관리팀(☎560-4485)
- 이의신청 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시기 : 2021. 6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보상절차
 -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토지 등의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보상금은 당사자와 보상협의를 성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개인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 보상금 산정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시장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평가 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추천이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세부물건조서를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사업추진에 따라 보상일정 및 열람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또는 사실과 같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검단로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대곡동)

일련 번호	구분	소재지	지 번	지목	공 부 면 적 (㎡)	편 입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종류및 내용	
				합계	3,835	3,835						
1	변경 없음	마전동	312-1	도	45	45	임*택	인천 서구 마전로 99번길 *				
2	변경 없음	마전동	159-6	임	10	10	한*수	인천 서구 서달로 130번길 *				
3	변경 없음	마전동	159-4	임	379	379	청도*씨 목*공*중	인천 서구 마전동 산 ***				
4	변경 없음	마전동	159-5	도	937	937	김*복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호	고양군 벽제면 성석리 ****				
							김*근	고양군 증면 일산리 ***				
5	변경 없음	마전동	727-4	도	160	160	국	기획재정부				
6	변경 없음	마전동	727-5	도	43	43	국	기획재정부				
7	변경 없음	마전동	290-19	도	3	3	공	인천광역시				
8	변경 없음	마전동	416-40	구	5	5	국	기획재정부				
9	변경 없음	마전동	313-3	도	52	52	박*신 (사망말소)	김포 검단면 불로리 ***	박*돈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	자녀	
									박*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	자녀	
									박*경	경기도 김포시 결포2로 **	자녀	
									박*숙	인천시 서구 완정로34번길 **	자녀	
									박*정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50길 **	자녀	
10	변경 없음	마전동	312-3	도	27	27	공	인천광역시				
11	변경 없음	마전동	321-18	도	30	30	임*협 (사망말소)	김포군 검단면 마전리 ***	김*희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23길 **	배우자	
									임*택 (사망말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자녀	
									임*현	서울시 광진구 면목로 ***-	자녀	

									임*택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23길 **	자녀	
									임*주	서울시 광진구 긴고랑로23길 **	자녀	
12	변경 없음	마전동	321-3	도	82	82	문*진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신용보증기금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동)(남대문지점)	가압류	
							이*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				
							이*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				
							이*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				
13	변경 없음	마전동	321-29	도	11	11	문*진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	신용보증기금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공덕동)(남대문지점)	가압류	
							이*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				
							이*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				
							이*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				
14	변경 없음	대곡동	720-16	임	353	353	김*철	인천 서구 검단로 *** (불로동)	인천산림조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 57 (남촌동) (서인천지점)	근저당권	
									인천산림조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 57 (남촌동) (서인천지점)	지상권	
15	변경 없음	대곡동	720-10	도	1	1	임*근	인천 서구 마천리 ***				미등기
16	변경 없음	대곡동	729-1	도	45	45	국	기획재정부				
17	변경 없음	대곡동	720-15	임	63	63	윤*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18	변경 없음	대곡동	720-14	임	10	10	윤*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19	변경 없음	대곡동	720-11	대	9	9	윤*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				
20	기정	대곡동	713-16	도	918	918	국	기획재정부				
	변경	대곡동	713-18	도	918	918	국	기획재정부				
21	변경 없음	대곡동	700-8	도	598	598	국	기획재정부				
22	변경 없음	대곡동	729-2	도	1	1	국	국토교통부				
23	변경 없음	대곡동	720-17	임	38	38	김*철	인천 서구 검단로 ***	인천산림조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 57 (남촌동) (서인천지점)	근저당권	
									인천산림조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 57 (남촌동) (서인천지점)	지상권	
24	기정	대곡동	700-9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대곡동	700-18	도	3	3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기정	대곡동	713-14	도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변경	대곡동	713-16	도	2	2	국	농림축산식품부				
26	기정	-	-	-	-	-	-	-				
	변경	대곡동	720-18	임	10	10	김*철	인천 서구 검단로 ***	인천산림조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 57 (남촌동) (서인천지점)	근저당권	
									인천산림조합	인천시 남동구 남촌로 57 (남촌동) (서인천지점)	지상권	

□권리관계 □토지등 누락 □규격,수량 □주소변경 □가격관련 □기타		
의 견 서		
1. 제 목		
2. 사업의 종류	「검단로609번길 소1-311호선 도로개설공사」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의 견		
5.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635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1. 4. 5. ~ 2021. 4. 19.(15일간)

2. 공고내용

1. 행 정 처 분 제 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68가8487 외 5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 행 정 지 사 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 할 관 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차량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5747, FAX 032-560-2793)		

3.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5747)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소유자명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1	68가8487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유*란	2021.03.25
2	16러7163	CR-V 4WD	김*원	2021.03.30
3	50우4937	렉서스 LS460L	강*수	2021.03.30
4	07러5640	스포티지	이*호	2021.03.30
5	51머0790	BMW X5 xDrive30d	유*애	2021.03.30
6	54오5341	엑센트 (ACCENT)	조*희	2021.03.31